

2017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

I . 결산현황

1. 세입결산

- 해당 사항 없음.

2. 세출결산

- 예 산 액 : 15억 9천 4백만원
- 예산증감 : 0원
- 예산현액 : 15억 9천 4백만원
- 지 출 액 : 15억 7백만원
- 이 월 액 : 0원
- 불 용 액 : 8천 7백만원

-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5.5%(전년도 1.9%)가 발생하였으며,
예산집행잔액(낙찰차액 등) 8천 7백만원임.

〈 2017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출결산 총괄 〉

(단위 : 백만원, %)

예산과목 (정책/단위사업)	예산현액(A)	지출액(B)	다음연도 이월액(C)	불용액 (D=A-B-C)	불용률 (%)
계	1,594	1,507	0	87	5.5
일반회계	1,594	1,507	0	87	5.5
사 업 예 산	1,409	1,334	0	75	5.4
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	62	56	0	6	9.7
사무관리비	38	38	0	0	0
국외업무여비	15	9	0	6	40.0
시책추진업무추진비	9	9	0	0	0
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	1,118	1,073	0	45	4.0
기간제근로자등보수	6	6	0	0	0
사무관리비	388	388	0	0	0
공공운영비	66	66	0	0	0
국내여비	333	309	0	24	7.2
시책추진업무추진비	19	19	0	0	0
특정업무경비	288	268	0	20	6.9
재료비	12	11	0	1	8.4
배상급	1	1	0	0	0
자산및물품취득비	5	5	0	0	0
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	229	205	0	24	10.5
자산및물품취득비	229	205	0	24	10.5
행정운영경비	185	173	0	12	6.5
기 본 경 비	185	173	0	12	6.5
사무관리비	96	96	0	0	0
국내여비	80	68	0	12	15.0
부서운영업무추진비	9	9	0	0	0

가. 예산 이용 : 해당 없음.

나. 예산 전용 : 해당 없음.

다. 예산 이체 : 해당 없음.

라. 예산의 변경사용 : 총 2건, 4천 5백만원

- 유가 상승에 따른 수사차량 유류비 증가 및 수사활동용 무전기 최신사양 교체, 범죄수사자료 온라인 조회단말기 운영에 대한 전용회선 및 보안장비 사용 요금 추가 발생으로 「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」(국내여비 ⇒ 공공운영비)사업에서

1천 5백만원

- 2017년 5월 출범한 새 정부 공약사업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한 선제적 준비로 「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」(국내여비 ⇒ 사무관리비)사업에서

3천만원

마. 예비비 사용 : 해당 없음.

바.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: 해당 없음.

사. 국고보조금 집행 : 해당 없음.

3. 기금결산 : 해당 없음.

4. 채권현재액 : 해당 없음.

5. 채무결산 : 해당 없음.

6.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: 해당 없음.

7.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

○ 2017년도말 민생사범경찰단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132개,
현재액 1억 7천 6백만원임.

< 2017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>

(단위:수량-개, 금액-천원)

구분	2016년도말 보유 현황		당해연도 증감액						2017년도말 보유 현황
			증가			감소			
			구매	관리전환	소계	매각	관리전환	소계	
일반 회계	수량 (개)	132	0	0	0	0	0	0	132
	금액 (백만원)	176,891	0	0	0	0	0	0	176,891

Ⅱ . 검토의견

1. 세출결산

가. 예산편성 시 불충분한 수요 분석 등으로 인한 변경사용

- 유가 상승에 따른 수사차량 유류비 증가 및 수사활동용 무전기 최신사양 교체 등 사용 요금 추가 발생으로 “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”의 ‘국내여비’에서 ‘공공운영비’로 1천 5백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,
- 2017년 5월 출범한 새 정부 공약사업인 「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」에 대비한 선제적 준비로 “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”의 ‘국내여비’에서 ‘사무관리비’로 3천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.

(단위 :천원)

예산과목		예산액	예산의 변경사용			예산현액	지출액	불용액 (불용률)
세부사업	통계목		감액	증액	승인일			
특별사법 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	국내여비 (01)	378,000	△45,000		'17.10.12	333,000	308,982	24,018 (7.2%)
	공공운영비 (02)	51,167		15,000	'17.10.12	66,167	66,135	32 (0.05%)
	사무관리비 (01)	357,701		30,000	'17.10.12	387,701	387,701	-

- ‘국내여비’는 4천 5백만원을 타 예산으로 변경사용한 이후에도 2천 4백만원(7.2%)을 불용처리하였으며, 이는 당초 예산 편성시 실소요예산에 대한 검토보다는 전례답습적 예산 편성에 기인한다고 할 것인바,

-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, 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”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‘변경사용’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검토 등을 거쳐 적정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민생사법경찰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나.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부적정

- 2017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의 사업별 사무관리비 총액은 5억 2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나, 세부 내역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.
 - ‘원고료(78만원)’, ‘수사업무 매뉴얼 제작 및 인쇄(6백만원)’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을 미집행하였으며,
 - ‘기본사무용종이류’는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, 1천 2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사무관리비 예산을 의회가 의결한 대로 집행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하였음.
-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무관리비의 비과학적이고 전례답습적인 예산 편성 및 자의적인 집행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 - 특히 2018회계연도에는 “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”사업의 ‘사무관리비(홍보비 5천만원 및 압수물 폐기비용 4백만원)’를 증액하였는바, 2018회계연도 사무관리비 또한 부적정 사용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며, 2019회계연도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시 결산내역 등 현실적인 예산집행 상황을 감안하여 관례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, 필요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〈사무관리비 집행내역〉

(단위 : 천원)

부서	세부사업	통계목	2017년도		2017년도		2018년도
			산출액		집행액	집행잔액	편성액
			세부내역	편성액			
계			521,356	521,356	-	553,854	
민	특별사법 직무역량 강화	사	강사료	9,920	7,020	2,900	9,920
			원고료	780	-	780	780
교재인쇄비			7,686	8,150	△464	7,686	
교육운영비			3,284	7,968	△4,684	3,284	
기본직무교육 교육생 중식비			4,270	4,389	△119	4,270	
직무공동연수			12,000	10,412	1,587	12,000	
생	특별사법 경찰활동 활성화 지원	무	기획단속 매식비	64,800	66,325	△1,525	72,000
			차량임차료	157,680	134,640	23,040	157,680
피복비(제복제작비)			49,200	49,096	103	4,7150	
홍보비			-	-	-	50,000	
수사활동 경비			21,888	40,714	△18,826	28,800	
수사업무 매뉴얼 제작 및 인쇄			6,000	-	6,000	6,000	
압수물 폐기비용			-	-	-	4,000	
백서발간			15,000	8,900	6,100	-	
수사팀 운영			37,133	63,692	△26,559	38,393	
체력단련실 운영			6,000	2,621	3,378	6,000	
사	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 스템 구축 및 운영	관	자치경찰제 도입 논의	30,000	21,710	8,289	-
			제안서평가위원수당	-	-	-	1,200
법	기본경비	리	기본사무용종이류	1,078	12,436	△11,358	1,059
			소규모수선비	285	3,135	△2,85	280
			행정장비수리비	1,512	10,207	△8,695	1,512
			도서구입비	400	2,769	△2,369	400
			주요업무추진급량비	73,080	66,093	6,986	82,080
			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	19,360	1,071	18,288	19,360
			단	비			

다. 수사 차량의 적절한 관리

- 2017회계연도에도 2016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차량 19대를 임차하고 있으나, 차량임차료 예산은 전년도보다 1천 4백만원 증액하여 1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이중 1억 3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고, 집행잔액인 2천 3백만원(14.6%)은 사무관리비 내에서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음.
- ※ 민생사법경찰단의 2016회계연도 차량임차료는 1억 4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 중 1억 3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고, 1천만원(7.0%)은 사무관리비 내에서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음.
- 민생사법경찰단은 차량임차를 위하여 필요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과도한 집행잔액을 발생시키고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자의적인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, 필요·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.

〈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차량 임차 현황〉

보유차량 : 21대 (임차 19대, 자차 2대)

수사차량 필요성

- 현장 단속·수사 활동, 피의자 호송, 압수물 수송, 야간단속, 미행 및 잠복활동 등에 필요
- 특히, 현장 증거자료 압수 등의 경우에는 수사정보 노출 우려가 있어 일시에 많은 장소를 방문하게 되므로 많은 차량 필요

최근 3년간 수사차량 임차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계약업체명	차량 대수	계약금액 (예산액)	계약기간	비고
2015	(주)케이티렌탈	17대	101,197 (143,160)	'15년3월~'15년12월 (10개월)	- 계약방법 : 수의계약 - 수의계약 사유 : 공개경쟁 입찰하였으나 응찰자 없이 2회 유찰 (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)
2016	롯데렌터카(주)	19대	133,433 (143,040)	'16년1월~'16년12월 (12개월)	
2017	퍼시픽렌터카(주)	19대	134,640 (157,680)	'17년1월~'17년12월 (12개월)	- 계약방법 : 제한경쟁 입찰 (중소기업자간 경쟁)

※ 2015년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회계 출납기간이 단축(익년도 2월→당해년도 12월)됨에 따라 2015년은 계약기간을 10개월로 함

라. 불용예산 발생의 문제

-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출 예산의 예산현액(15억 9천 4백만원) 대비 불용률(집행잔액 8천 7백만원)은 5.5%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(2.3%) 보다 높은 편임.
- “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” 사업 중 ‘국외업무여비’의 경우는 편성 예산(1천 5백만원) 대비 41.2%에 달하는 불용률(불용액 6천 2백만원)을 보이고 있음.
 - 동 사업 중 ‘국외업무여비’의 경우 해외 우수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바,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미집행하는 등의 불성실한 예산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, 필요하고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하여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민생사법경찰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< 20%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>

(단위: 천원)

세부사업	통계목	예산현액	지출액	불용액	불용률(%)	불용사유
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	국외업무 여비	15,000	8,814	6,186	41.2	지명분야 수사업무 처리 및 각종 현안 업무로 상반기 추진이 여의치 않았으며 하반기 2회 실시

전문위원 : 김태한

입법조사관 : 신정희